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 임신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제40조 관련) 중 임신중인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 제1호~제8호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원자력법」 등 폐지 또는 분리된 과거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사용금지 직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원자력안전법**」으로 개정하고자 함

* '11.7.6.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1.7.6. 폐지)」을 통합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 '11.7.25. 「원자력법」이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진흥법」으로 분리

3.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 임신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제40조 관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임신 중인 여성 사용금지 직종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와 제106조에서 규정한 등근 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같은 규칙 제107조와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폴리(Pulley)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 제3절에 따른 전기작업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과 제1편 제7장 제7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4장 제2절 제3관에 따른 터널 작업, 같은 규칙 제42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같은 규칙 제50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제4호에 따른 진동작업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 작업 및 잠수작업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에 따른 고열작업이나 한랭작업
8. 「원자력안전법」 제91조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 임신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제40조 관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임신 중인 여성 사용금지직종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와 제106조에서 규정한 동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같은 규칙 제107조와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풀리(Pulley)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 제3절에 따른 전기작업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과 제1편 제7장 제7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4장 제2절 제3관에 따른 터널작업, 같은 규칙 제42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같은 규칙 제50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제4호에 따른 진동작업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에 따른 고열작업이나 한랭작업
8. 「원자력안전법」 제91조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제40조 관련)

구 분	사 용 금 지 직 종
임신 중인 여성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와 제106조에서 규정한 동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같은 규칙 제107조와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풀리(Pulley)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 제3절에 따른 전기작업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건물 해체 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과 제1편 제7장 제7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4장 제2절 제3관에 따른 터널작업, 같은 규칙 제42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같은 규칙 제50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 제4호에 따른 진동작업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에 따른 고열작업이나

	한랭작업 8. 「원자력안전법」 제91조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9. 납,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불화수소산), 염소(산), 시안화수소(시안산), 2-브로모프로판, 아닐린, 수산화칼륨, 페놀,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 염화비닐, 벤젠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10.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Cytomegalovirus)·B형 간염 바이러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짙은 업무. 다만, 의사·간호사·방사선기사 등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양성 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11. 신체를 심하게 피거나 굶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있어야 하는 업무 12.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1. 납,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 다만, 모유 수유를 하지 아니하는 여성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	1.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18세 미만인 자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 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 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와 제60조에서 규정한 등근톱으로서 지름 25센티미터 이상, 같은 규칙 제61조와 제62조에서 규정하는 띠톱으로서 풀리(Pulley)의 지름 75센티미터 이상의 기계를 사용하여 목재를 가공하는 업무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와 제106조----- ----- ----- 제107조와 제108조----- ----- -----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편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정전 작업, 활선작업 및 활선 근접작업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3장 제3절 ---- 전기작업
3.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 제2장 제3절에서 규정한 통나무 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와 제6편 제5장에 따른 건물 해체 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건물 해체작업(지상에서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제외한다)과 제1편 제7장 제7절에서 규정한 통나무비계의 설치 또는 해체업무
4.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편 제3장 제3절에서 규정하는 터널 작업, 같은 규칙 제439조에 따른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같은 규칙 제452조에 따른 붕괴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 제4장 제2절 제3관에 따른 - ----- 제42조----- ----- 제50조----- ----- -----
5.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8조 제4호에 따른 진동작업	제512조 제4호-----
6.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2조 제2호 및 제3호----- -----
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에 따른 고열작업이나 한랭작업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 --
8. 「원자력법」 제97조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의 피폭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8. 「원자력안전법」 제91조----- ----- ----- -----
9.~13. 현행과 같음	9.~1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연 락 처	(044) 202-7477